

필리핀의 2004년 대체적 분쟁해결법 소고* - UNCITRAL 모범법의 수용과 관련하여 -

An Overview of the ADR Act of 2004 in the Philippines
- Focused on the Adoption of the UNCITRAL Model Law -

김 선 정**
Sun-Jeong Kim

〈목 차〉

- I. 서 언
- II. 필리핀 중재법의 변천
- III. 구법에서의 모범법 수용문제
- IV. 2004년 개정 ADR법
- V. 결 론

주제어 : 필리핀 2004년 ADR법, 필리핀중재법, 필리핀분쟁해결센터, 필리핀과 UNCITRAL
모범중재법, 필리핀과 뉴욕협약

* 이 논문은 2009년 7월 9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국중재학회·필리핀분쟁해결센터 공동주최 「2009
년 한·필리핀 경제협력 정책세미나 및 학술대회」 발표를 위하여 제출하였던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I. 서 언

1985년 6월 25일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채용하여 같은 해 12월 11일 유엔총회의 승인을 받은 국제상사중재 모범법은(이하 ‘모범법’이라 한다) 국제중재와 국내중재의 조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국제상사중재 실무에 특별히 요구되는 법의 통일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범법은 당사자의 자유 보장, 중재절차의 기능과 공정성 강화, 규칙의 보충과 명확화를 통하여 성문법규정이 실무에 도움을 주도록 고안되었다. 모범법제정 이후 각국은 주도면밀한 검토에 들어갔고 각국의 실정에 따라 수용 또는 수용거부와 유보를 결정하여왔다.¹⁾ 또 국제사회에서 중재관련입법이 정비될 때마다 각국이 중재기관의 정비 등을 통하여 중재제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왔듯이 모범법 이후도 그랬다.²⁾ 전체적으로 보아 모범법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³⁾

이와 같이 특정 국가의 모범법 수용여부 및 수용내용을 살피는 것은 그 국가를 중재자로 선택할지 여부, 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지 여부와 그 국가의 중재문화의 특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한편 중재제도의 본질과 그 세계적 조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⁴⁾

필리핀은 1953년 중재법을 제정하고 일찍이 1958년의 뉴욕협약을 비준하였다. 그러나 국제상사중재 실무에 종사하는 일부 법률가들의 강력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이르러서야 모범법을 수용하였다. 본고는 필리핀 상사중재의 입법화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요약하면서 UNCITRAL 모범법 수용에 대한 논의와 수용상황을 살펴보며 필리핀 상사중재제도의 전모를 이해해 보고자 한 것이다. 최근 아세안국가들의⁵⁾ 중요성도 부각되는

1) 각국에 있어서 조항별 채용상황에 대해서는 Peter Binde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UNCITRAL Model Law Jurisdictions*, Sweet & Maxwell, 2000, pp.241-313.

특히 동남아국가의 실정에 대하여 Michael Polkinghorne / Darren Fitzgerald, "Arbitration in Southeast ASIA: Hongkong, Singapore and Thailand Compared", *J. INT'L ARB.* 18(1) (2001), p.113.

2) Julian D. M. Lew / Loukas A. Mistelis, *Arbitration Insights. Twenty Years of the Annual Lecture of the Schoo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Kluwer Law, 2007, p.463.

3) 모범법은 하나의 표준일 뿐이다. 그러므로 각국은 이를 수정, 추가, 삭제, 유보 방식으로 채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법이 세계 각 지역에 분포한 57개 국가(미국의 주 제외)에서 채택된 점, 미채택 국가들도 모범법을 고려하여 중재법을 개정하는 점, 국제중재를 전제한 모범법을 많은 나라들이 국내중재에도 적용하는 점, 그동안 비록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각국의 입법, 실무, 판결 등이 나름대로 수립·정리되고 이런 상황을 기초로 2002년 모범조정법이 확정되고 중재법에서도 중재합의의 서면방식(제7조)과 임시적 보호조치의 집행(제17조) 등 13개 주제에 대한 개정논의가 진행 중인 점 등에서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Peter Sanders, *The Work of UNCITRAL on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2nd & expende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pp.53-56.

4)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예컨대 Gerold Herrmann, "Adoption of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A Continuing Success Story", 「중재학회지」 제7권(1997), 3면 이하를 비롯하여 「중재학회지」 제7권(1997)은 캐나다(장문철), 독일(정선주), 영국(강병근), 홍콩(김선정)에서의 모범법 수용문제를 특집으로 다룬바 있다.

5) 중재제도의 관점에서 아세안을 소개한 자료로는 Rukia Baruti Dames, "Provisions for Resolution of Investment Disputes Within ASEAN - The First Arbitral Award and Its Implications for ASEAN's Legal

시점에서 교역과 국제투자의 상대국으로서 필리핀중재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⁶⁾ 그러나 자료가 제한되어 있어⁷⁾ 서설적 검토에 그친다.

II. 필리핀 중재법의 변천

필리핀의 경우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중재제도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왔다.

1. 부락(部落) 중재시대

필리핀의 중재제도의 기원은 1521년의 스페인 식민지배 시대 이전 바랑가이(*barangay*)와⁸⁾ 같은 공동체로 거슬러 올라간다.⁹⁾ 공동체 내의 분쟁은 다투(*datu*)라 불리는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 해결되었으며 그의 가부장적 권위로 말미암아 종국적 해결방안이 되었다. 이 당시 바랑가이는 평균 30여 가족을 단위로 하는 소규모공동체였던 만큼 과연 이 시기 필리핀에 성문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엇갈린다.

Framework”, J. INT’L ARB. 22(6) (2005), pp.212-222..

- 6) 아세안국가의 중재제도는 제 각기 다른 문화, 역사를 배경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발전해 왔다. 예컨대 인도네시아의 경우 프랑스민사절차법을 계수한 네덜란드 민사절차법을 그대로 번역하여 1847년에 민사절차법 중에 중재제도를 법정하였고, 말레이시아는 1950년의 영국 중재법을 모델로 한 중재법을 1952년 제정하였다. 그러나 1978년 설립된 콜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는 UNCITRAL의 상사중재규칙을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채용한바 있다. Cherry-Lynn S. Ricafrente, “Commercial Arbitration in ASEAN countries”, Juliana R. Ricalde, Commercial Arbitration, U.P. Law Center, 1983, p.40, 50, 54. 필리핀의 경우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분쟁을 필리핀에서 ADR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법률이 정비되고 기관이 구축되었으므로 앞으로 ADR을 선호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기량을 기르며 관련 판례와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이 분쟁해결지로서 성공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당연히 분쟁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 우리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필리핀 ADR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법적 기초의 진전이라고 할 2004년 법의 실질적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다.
- 7) 특히 판례집을 구할 수 없어 본고에 인용한 판례는 모두 재인용한 사례임을 밝힌다.
- 8) *Barangay*는 원래 말레이족 정착민들이 보르네오 섬에서 필리핀으로 타고 온 배의 이름인 발랑가이(*balanghai*)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각 배에는 대가족이 타고 있었으며, 배의 선장은 가족 정착마을의 지도자인 *datu*가 되어 마을을 통솔했다. 바랑가이 각 마을에는 30~100가구가 살았으나 서로 고립된 상태로 존속했다. 이슬람교 최초의 거점인 민다나오 섬을 제외하면, 필리핀 군도 어디에서도 큰 정치집단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은 16세기에 스페인이 필리핀을 쉽사리 정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는데, 원주민의 저항이 고립되고 분산되어 정복자에게 큰 도전이 되지 못하였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바랑가이를 각 섬에서 지방행정의 기초단위로 삼았다.
- 9) Rufus B. Rodriguez, Philippine Arbitration and The UNCITRAL Model Law, Rex Book store, 1996, p.3.

2. 스페인민법시대

1521년 스페인의 필리핀정복 후 400여 년 동안 식민통치가 계속되면서 일부 스페인법이 계수되었다. 1889년 스페인 민법전은¹⁰⁾ “화해와 중재((The Codigo Civil of Spain Book IV, Title XIII. De los transacciones y compromisos)”라는 장을 두어 중재제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민법 제1820조와 제1821조),¹¹⁾ 동조는 같은 해 스페인 국왕령에 의하여 필리핀에서도 그 적용이 있게 되었다. 스페인민법 아래서 화해에 관한 조항은 같은 법아래서 중재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¹²⁾ 스페인민법의 화해조항은 법정 밖에서의 다툼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종류의 다툼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절차는 민사판결에 관한 Ley Enjuicinamente de Civil의 제820조~제830조에서 규정하였다.

3. 미국식민지시대

1901년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자마자 민사절차법(Code of Civil Procedure)을 제정하여 스페인의 민사판결법(Ley Enjuicinamente de Civil)을 대치하였다. 그러나 동법에는 중재에 대한 조항은 없었고 기껏해야 참조조항에 불과하였다. 대법원은 스페인 민법의 실체법 조항이 아직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조항은 위 민사판결법으로 인하여 이미 삭제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다.¹³⁾

이와 같이 중재에 관한 본격적인 입법이 마련되지 못하던 시절에도 당사자들이 중재에 위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는 상거래발전에 따른 당연한 욕구였을 것이다. 그러나 1903년 필리핀 대법원은 분쟁에 관한 모든 문제해결을 오직 중재인에게 맡긴다는 계약조항을 무효라고 판결하였다.¹⁴⁾ 법원은 그와 같은 계약조항은 법원의 관할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공서(public policy)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법원의 완고한 태도는 몇 건의 후속판결에서¹⁵⁾ 다소 완화되었다.

1921년에 필리핀 대법원은 커먼 로를 적용하여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바 있다.¹⁶⁾

10) 국내에서 이 법전과 필리핀 민법과의 관계에 대한 소개로는 Gilbert S. Coronel, “Philippine law on persons and family relations: What it says, what it means, and why it is like that”, 「외법논집」 제17집 (2004), 한국 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44~48면.

11) 이는 스페인 구민법의 해당조항으로 새 민법에서는 제2042조~제2046조가 중재를 규정한다.

12) 화해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다툼에 대하여 결정해 줄 것을 제3자에게 맡길 수 있다(제1820조). 화해에 관한 규정은 중재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중재절차의 형식, 범위, 효과에 대하여 민사절차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821조).

13) Cordoba v. Conde[2 Phil.445(1990)]. Rodriguez, op.cit., p.4.

14) Wahl and Wahl v. Donaldson, Sims & Co., 2 Phil.301; Mariano P. Marcos, “Concept, legal basis and scope of commercial arbitration”, Julian R. Ricalde, Commercial Arbitration, U.P. Law Center, 1983, p.6.

15) Chang v. Royal Exchange Assurance Corporation of London(1907)8 Phil. 399; Allen v. Province of Tayabas(1918) 38 Phil.356. 그리고 다음 각주 판결.

이 때 대법원은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커먼 로 세계에서는 고대 관행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통상적인 법적 절차가 규정한 재판부가 아닌 다른 판정부에 의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분쟁해결 방식이라고 밝힌바 있다.¹⁷⁾ 대법원은 중재합의는 법원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당사자에 대한 법원의 관여가 봉쇄되어 있어 중재협정이 무효라고 선언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극히 못마땅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개입하거나 중재인의 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중재합의를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여기는 판결이 이어졌다.¹⁸⁾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초기 필리핀 법제는 중재제도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전통과 시민법에 의하여 중재라는 분쟁해결방식이 승인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제도에 대하여 부정적이던 법원의 태도는 1920년대에 이르러 다소 완화되었다.¹⁹⁾ 중재제도의 여러 가지 장점이 부각되고²⁰⁾ 법원 우위의 전통적 사법관행이 조금씩 바뀌면서 중재제도를 법제도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졌으나, 실제로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1950년 필리핀 민법시대

과거 스페인 민법상 중재조항을 대치하여 스페인민사절차법이 적용된바 있었으며 동 조항은 현행 필리핀 민법인 1950년 민법에 재생되었다. 1950년 민법은 제2042조부터 제2046조까지 5개 조문으로 구성된 중재에 관한 장을 두었다. 이를 보면 타협절차를 밟고자 하는 동일 당사자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에게 그들의 분쟁에 대하여 판정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2042조). 민법의 화해절차에 관한 장의 조항들이²¹⁾ 중재에도 적용될 수

16) Chan Linet vs. Law Union and Rock Insurance Co., et al., 42 Phil.548(1921).

17) Victor P. Lazatin / Patricia Ann T. Prodigalidad, "Arbitration in the Philippines", p.1.

18) Vega v. The San Carlos Milling Co., Ltd.(1924)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당해분쟁에 법원의 소송절차를 준용한다는 조건을 명문화하여 중재부탁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 중재에 긍정적 방향으로 진전한 판결은 Manila Electric Co. v. Pasay Transportation Co., 57 Phil.600(1932).

19)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태도가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다. 1992년 Chung Fu Industries (Phils.), Inc. vs. Court of Appeals(3rd, 1992)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1924년의 한 판결(The San Carlos Milling Co., Ltd.(1924) 51 Phil. 908)을 인용하였는데 동 판결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다툼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약정한 것은 법원의 소송으로 가기 위한 전제절차일 때 유효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20) Marcos, op.cit., pp.7-9.

21) 민법상 화해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2004년 ADR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에도 중재제도에 그 적용이 있다. 민법상 화해(compromise)는 이미 시작된 분쟁해결절차를 당사자 상호간의 양보로 소송 없이 종국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며(제2028조), 법원은 민사 분쟁에서 당사자가 공정한 화해에 합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제2029조), ①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화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한 때나 ②만일 당사자 일방이 소송 절차 개시에 앞서 화해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한 때 민사소송과 절차의 연장기간과 관련조항이 대법원규칙의 적용을 받고 당해 규칙이 화해를 담당할 우의적 화해인의 지명과 의무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모든 민사소송과 절차는 연장되며(제2030조), 또

있음은 기술한 바와 같다(제2043). 중재판정이나 결정의 모든 조항은 종국적이며 제2038조~제2040조에 대한 선입견 없이 유효하다(제2044조).²²⁾ 당사자의 일방은 다수의 중재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제2045조). 중재인 선임과 중재절차는 대법원이 제정하는 사법절차의 적용을 받는다(제2046조).

5. 1953년 필리핀 중재법시대

(1) 중재법

1) 제정배경

중재에 대한 법제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필리핀정부는 1953년에 소위 중재법으로 알려진 조항을²³⁾ 신설하기에 이르렀다.²⁴⁾ 동 조항은 기존의 어떤 조항을 대치한 것이 아니라 신설조항을 추가한 것이었다.²⁵⁾ 동법은 민법조항의 일부가 여전히 유효함을 밝혔다. 중재조항의 신설에 따라 의회는 중재제도가 싸고 빠르며 우의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서 소송을 피해가는 만큼 법원의 환영을 받아야 할 제도라는 근대화된 중재관(仲裁觀)을 갖게 되었다.²⁶⁾ 동법은 1925년 미국 연방중재법을 따르고 있다.²⁷⁾

2) 주요내용

이 법은 2004년 ADR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50여 년간이나 적용된 법이다. 2004년 ADR

법원은 패소당사자가 화해를 진지하게 희망하였던 경우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제2031조). 화해가 후견인, 부모, 불참자를 대표한 자, 상속재산의 집행자나 관리자에 의하여 개시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인증이 필요하다(제2032조). 사법관은 양도인과 그들의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화해할 수 있다(제2033조). 가해행위로부터 야기되는 민사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도 화해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화해가 있다고 하여 처벌을 위한 공법상 소송은 소멸되지 아니한다(제2034조). 사람의 민사상 지위, 혼인의 유효여부 또는 법적 이혼, 법적 이혼사유, 장래의 부양, 법원의 관할, 적출(嫡出) 등의 문제는 화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제2035조). 화해는 명확하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단념은 화해의 대상이 된 분쟁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된다(제2036조). 화해는 당사자에 대하여 유효하며 기판력(res judicata)이 미친다. 사법적 화해는 집행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제2037).

22) 화해가 오해, 속임수, 폭력, 협박, 부적절한 압력, 허위문서 등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민법 제1330조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당사자의 일방이 화해를 이유로 이미 시작된 소송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사실관계의 오해를 주장할 수 없다(제2038조). 당사자가 모든 쟁점에 대하여 화해한 후에, 모든 쟁점에 관련된 것은 아니나 한두 가지 다툼에 관련된 문건이 발견되었거나 하여도 당해 문건이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은닉된 경우가 아니라면 화해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제2039조). 화해 당사자는 그들의 일방이나 쌍방이 소송의 종국판결의 존재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면 화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할 수 있다. 판결을 무시한 것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화해를 공격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제2040조).

23) Republic Act No.876.

24) 입법경위에 대하여는 Rodriguez, op.cit., p.7.

25) Title XIV, Book IV of the Civil Code.

26) Eastboard Navigation Ltd. vs. Juan Ysmael & Co., Inc., 102 Phil. 1 (1957). Rodriguez, op.cit., p.7.

27) Salvador S. Panga, Jr., "Overview of Arbitration in the Philippines", 한국중재학회 / 필리핀분쟁해결센터 공동주최 「2009년 한·필리핀 경제협력 정책세미나 및 학술대회자료집」, 2009, 25면.

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1953년 중재법을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본고에서는 전체적인 윤곽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중재대상 및 적격

1953년 중재법에 따르면, 둘 또는 그 이상의 분쟁당사자는 자신들 사이에 야기된 다툼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중재에 부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에 앞으로 야기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²⁸⁾ 즉 사전에 중재합의가 없었지만 이미 현실적으로 야기된 분쟁을 중재에 부치는 것(submit to arbitration)과 장차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것(agree to settle by arbitration)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1936년 법(commonwealth Act No.103)에서 규정하는 산업관련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은 중재대상에서 제외 된다.²⁹⁾ 그 밖에도 공서를 이유로 중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이 있다. 예컨대 시민권문제, 결혼과 법정이혼의 유효성, 법률이혼사유, 장래의 부양, 법원의 관할, 상속제한 등의 문제는 중재대상이 안되므로 이들 문제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 역시 무효이다. 중재계약이 체결되어있는지를 다투는 것도 법원이 판결할 문제이므로 역시 중재대상이 아니다.

나. 중재절차

중재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들이 합의한 계약조항에 따라 중재절차를 진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³⁰⁾ 법원은 당사자가 유아이거나 무능력자선고를 받은 경우에 중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후견인 또는 당해소송에 대한 후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³¹⁾ 또 중재합의의 유효성, 당사자 간 중재합의적용의 실패, 중재인의 선임과 교체 등의 문제를 약식결정하거나 청문할 수 있다.³²⁾

다. 중재인 자격

중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시민권을 완전히 향유할 수 있는 법정연령에 달하였을 것과 문맹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두 가지를 최소자격요건으로 규정한다.³³⁾ 중재인은 중립적이어야 하며 불편부당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그의 입장을 대변할 자를 중재인으로 선입할 수 없다. 중재법은 혈족이거나 혼인에 의하여 6촌이내의 인적 관계가 있는 자는 공정하고 편파성 없는 중재판정을 침해할 가능성 있다고 간주하여 당해 사건에 대하

28) Republic Act 876, Sec.2.

29) Republic Act 876, Sec.3.

30) Republic Act 876, Sec.6.

31) Republic Act 876, Sec.5.

32) Republic Act 876, Sec.6.

33) Republic Act 876, Sec.10.

여 중재인이 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결정하여야 할 분쟁이나 그 원인 또는 절차의 결과에 대하여 재정, 신인(信認) 기타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역시 중재인이 될 수 없다.³⁴⁾

라. 중재인의 권한

중재인은 중재절차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다. 그는 소환장발부에 의하여 특정인이 중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할 권한이 있고, 다른 증인의 증언동안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중재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대한 보존이나 보관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중재인은 증거수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컨대 제3자가 점유하는 문서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인에게 문서지참영장(*subpoena duces tecum*)을 발부할 수 있다. 중재인은 당사자에게 사실기재나 반대쟁점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요구할 수 있다.³⁵⁾ 분쟁당사자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그들의 다툼을 구술청문대신 중재에 부칠 수 있다. 당사자는 그들이 원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중재인으로부터 그들의 분쟁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청문은 중재인의 결정이나 분쟁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개될 수 있다. 중재인은 제공된 증거의 관련성이나 중요성을 단독으로 판단하며, 증거에 관한 법원규칙에 기속되지 않는다. 또 적법절차에 따라 목격자조사를 할 수 있다.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단독중재가 아닌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가 중재인 전원의 합의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 한 중재인의 다수가 서명하면 된다.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고 공평하다고 여겨지는 구제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데 특정이행 같은 것은 그 예이다. 중재인의 권한은 오직 중재 부탁된 범위 내에서 인정됨은 당연하다.³⁶⁾

마. 중재판정의 정정과 사법심사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중재판정에 대하여 확인, 수정 및 정정, 삭제할 수 있다.³⁷⁾ 위의 청구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적절한 법원에³⁸⁾ 청구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뉴욕의 실무관행에 따라 미국 연방중재법이 입법화한 것을 따른 것인데 뉴욕주법이 90일을 허여하고 있는데 비하여 필리핀법이 단지 30일을 허여하고 있는 것은 중재판정의 효력을 신속히 확정하고자 하는 의도라고³⁹⁾ 한다. 법원이 중재판정에 대하여 정정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중재분쟁의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공정적으로 입증하

34) Republic Act 876, Sec.14.

35) Republic Act 876, Sec.15.

36) Custodio O. Parlade, "Remedies after arbitration award", Juliana R. Ricalde, Commercial Arbitration, U.P. Law Center, 1983, p.93.

37) Republic Act 876, Sec. 23, 24, 25, 26.

38) "적절한 법원(the proper court)"이라 함은 중재계약에서 특정한 법원을 말하며 그것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거주지, 영업지, 중재지를 의미한다. Parlade, op.cit., p.76.

39) Parlade, op.cit., p.78.

여야 한다. 즉 ①당해 중재판정이 부패, 사기 또는 부적절한 수단 등에 의하여 내려진 것인 때, ②중재인의 편파성이 증명되는 때, ③중재인이 위법행위로 유죄인 때, ④중재인이 권한을 남용한 때이다.⁴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재판정의 수정이나 정정을 명할 수 있다. 즉 ①중재판정 가운데 어떤 사람이나 재산의 묘사에 있어서의 실수나 묘사된 수치를 잘못 계산한 것이 증명되는 때, ②어떤 사항에 대한 중재판정이 제출되지 아니한 때, ③중재판정이 다툼의 실체상 사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형식적 문제에 대하여 불완전한 때이다.⁴¹⁾ 중재판정의 승인, 취소, 정정 명령이나 판결은 법률문제에 대한 이송명령 절차를 통하여 항소할 수 있다.⁴²⁾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심사는 항소법원 규칙 제65조에 의하여 청원할 수 있다.

특별민사이송소송에 있어서 만일 중재인에 의한 재량권의 심각한 남용이 있었거나 중재인이 관할권이 없거나 또는 관할권을 넘어 서지 않은 이상 대법원은 중재인이 확정한 사실관계나 중재인이 해석하고 적용한 법률문제를 심사하려 하지는 않는다.⁴³⁾ 준사법적 실체의 사실확정 문제는 중재인의 판단이 전폭적으로 존중되지만 동시에 중재판정은 실질적 증거법칙의 대상인 것이며 이를 종국적이라거나 다툴 수 없는 것으로 선언할 수는 없다.⁴⁴⁾

중재판정은 당사자가 종국적임을 합의한 경우에도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 판례상 확인된 사유를 보면 중재판정이 사기나 중재인의 부정부패로 내려진 때, 일방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한 때, 어떤 항목에 대하여 일방당사자에게 불공정하게 과도한 배상을 명한 경우 등이다.⁴⁵⁾

(2) 뉴욕협약에의 가입

필리핀 중재제도 역사에서 특이한 것은 1958년에 성립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에 대하여 그 해에 서명하였다는 점이다. 필리핀은 이 협약을 1967년 7월 6일에 비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뉴욕협약이 가입국에게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제3조), 외국중재판정의 필리핀 내에서의 승인과 집행은 그 유효성이 확정적이기 보다는 추정되는 정도로 취급되어 왔다.⁴⁶⁾

필리핀 중재법이 제정된 후 50년이 경과한 후에야 새로운 중재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40) Republic Act 876, Sec. 24.

41) Republic Act 876, Sec. 25.

42) Republic Act 876, Sec. 29.

43) 이와 같은 사실은 1992년 Chung Fu 사건에서 인용한 Sime Darby Pilipinas, Inc. v. Magsalin(1989) 180 SCRA 177에서 확인되었다.

44) Punta del Norte Corp. v. Arbitrator Victor P. Lazatin(7th Div., Feb.18, 1992)C.A.-G.R.Sp. No.25980).

45) Rodriguez, op.cit., pp.12~13.

46) Lazatin / Prodigalidad, op.cit., p.3.

2004년 대체적 분쟁해결법이 그것인데, 동법은 중재를 특히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유효하고 유용한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해결방안이라 할 수 있다. 2004년 이전에는 국제중재 행위에 적용할 법은 존재하지 않았었다. 그 대신 국제적 분쟁해결에 있어 필리핀 기업과 정부는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중재기관의 규칙에 따른다는 합의를 계약당사자 또는 분쟁당사자와 체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하여 왔다. 더구나 뉴욕협약을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어떤 법도 제정되지 못한 상태였다. 그 결과 외국상사중재판정이 필리핀에서 승인·집행되는 것은 뉴욕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국가에서마다를 바 없었다.

(3) 기타 중재관련법 및 규칙

그동안 필리핀에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분쟁해결제도가 있었고 그 근거법도 다양하였다.⁴⁷⁾ 예컨대 1973년 대통령령은 헌법기관을 제외한 정부의 부처, 기관, 정부소유 및 관리 기업, 국, 사무소나 대리기관 간에 법령, 계약, 협정 등의 해석으로부터 야기되는 분쟁, 배상청구, 다툼은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결정에 맡기도록 하였다.⁴⁸⁾ 그 밖에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외국인인 특허의 강제실시에 관한 분쟁은 특허법에⁴⁹⁾ 의하여 처리되었다.⁵⁰⁾ 노동분쟁에 관한 강제중재와 임의중재를 규정한 노동법,⁵¹⁾ 앞서 설명한 지역차원의 분쟁해결방식인 *Katarungang Pambarangay*를 규정한 지방정부법,⁵²⁾ 건설중재를 규정한 건설산업중재법,⁵³⁾ ⁵⁴⁾ 필리핀 상업회의소(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의 상업중재규칙⁵⁵⁾ 등이 그것이다.

47) Michael Pryles ed., *Dispute Resolution in Asia*, 2n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02, p.280.

48) Presidential Decree No.242.

49) REP. Act No. 165, Secs. 34-A, 34-B. P.D. NO. 1263에 의하여 개정.

50) Esteban B. Bautista, "Philippines", Gonzalo T. Santos ed., 1980 ASEAN Comparative Law Series Vol. 7.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ASEAN Law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1982, pp.62-63.

51) Art.217.

52) Rodriguez, op.cit., pp.16-17.

53) Executive Order No. 1008(Feb. 4, 1985).

54) 건설중재는 필리핀에서 가장 활성화된 분야로 생각된다. Panga, Jr., 전계논문, 29~32면.

55) Rodriguez, op.cit., pp.18-20.

III. 구법에서의 모범법 수용문제

1. 구법과 모범법의 차이

(1) 모범법의 등장

위에서 본바와 같이 필리핀 중재법으로 불렸던 구법은 1953년 제정된 아래 개정 없이 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 이 기간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중재제도에 대한 대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1985년 12월 11일 유엔총회에서 인증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연합국 제상거래법위원회의 모범법의 등장이 그 한 가지였다. 유엔총회는 국제상사중재실무분야에서 중재절차법의 통일이라는 요구에 부합하도록 모든 국가들이 모범법을 고려하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국내중재와 국제중재의 조화도 중요시 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조류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는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모범법 제정 전의 1976년 모범규칙도 필리핀 법에 반영되지 않았었다. 이에 따라 1953년 법(이하 “필리핀 중재법”이라 한다)과 모범법 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였다.

(2) 중재의 대상

필리핀 중재법은 현존하는 모든 다툼을 그 대상으로 포괄하였다. 즉 당사자 간에 가치, 평가, 분쟁으로부터 야기된 사전적이거나 사후적인, 우연하거나 결과적인, 부수적인 모든 다툼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모범법은 국제상사분쟁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정하고 있다(제1조).⁵⁶⁾

(3) 중재인 자격

필리핀 중재법은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 모범법과 차이가 있다. 모범법에서는 중재인이 구비하여야 하는 특정한 자격요건은 없다. 분쟁당사자들도 중재인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필리핀 중재법은 중재인으로 선임되기 위한 최소요건을 법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재인은 최소연령에 달하여야 하고 시민권을 제한 없이 향유하여야 하며, 문맹이 아니어야 한다. 중재인은 중립적이어야 하고 편파적이 아니어야 하는 것은 어느 중재법에서나 요구하는 조건인데, 분쟁당사자의 일방은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는 자를 중재인으로

56) ‘국제’와 ‘상사’의 개념은 모범법 제1조가 상세히 규하고 있다. 그러나 14개 다른 법역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모범법을 채용한 캐나다나, 내지(内地) 및 타이완과 법제가 다른 홍콩의 경우 ‘국제’의 개념은 법원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상사’의 개념도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Henri C. Alvarez, Neil Kaplan, CBE, QC, and David W. Rivkin, Model Law Decis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pp.5-11, pp.15-20.

선임할 수 없다. 중재인은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판정을 받을 당사자의 권리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예단하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중재인이 분쟁당사자와 6촌 이내의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분쟁의 원인이나 절차진행의 결과에 대하여 재정적으로나 신탁적인 관계 또는 이해관계에 있을 때에는 사적 편견이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모범법 아래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인은 국적을 이유로 배척될 수 있고(제11조), 중재인선정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자는 그의 중립성이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고지하여한다는 포괄적 규정(제17조)만 두고 있다.

(4) 법원의 개입

필리핀 중재법은 법원의 광범위한 개입을 인정하고 있었다.⁵⁷⁾ 법원은 중재법정이 재량을 심각하게 남용한다는 등의 이유로 중재절차에 개입하고 중재판정을 심사할 수 있었다.⁵⁸⁾ 중재판정에 대하여 사법심사가 행하여질 경우는 ①가정된 사실이나 법의 잘못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명백하고, 전체적이며, 편견에 기한 것일 때, ②중재인이 당사자의 계약 위반시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에게 의뢰한다는 당사자의 합의를 적용함에 실패한 경우, ③중재인이 당사자의 일방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 ④당사자의 일방이 중재법정에서 그의 입장을 나타낼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⁵⁹⁾ ⑤중재판정을 중재인에 대한 사기나 매수로 얻어 낸 경우, 또는 중재인의 편파성이 명백한 경우, 중재인이 부정행위로 유죄로 된 경우, 중재인이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한 경우 등이다.

한편 모범법은 법원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중재판정과 중재법정의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중재판정이 모범법 제34조에 규정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는 제36조의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와 같다. 제34조는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의 기한을 중재판정문 수령일로 부터 3월로 한정하였고 판정취소의 최소한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단독형태의 구체수당을 인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행위무능력자인 경우, 당사자가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중재판정이 중재부탁 된 범위를 넘어서선 경우,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다르지 아니한 경우, 분쟁대상 사건이 당해 국가의 법에 의하여 중재에 의하여 합의할 수 없는 사항임을 법원이 발견한 경우, 중재판정이 국가의 공서에 반하는 경우

57) Rainier R. Mamangun, "The Philippine Arbitration Law and The UNCITRAL Model Law", <http://www.hg.org/article.asp?id=5124<2009.5.1.방문>>.

58) 이송명령의 특별민사소송이 포함된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중재인에 의한 심각한 재량권의 남용이 있거나 그가 관할권을 넘어서거나 관할권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관계나 중재인이 해석하고 적용한 법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Chung Fu Industries, Inc. vs. Court of Appeals (206 SCRA 545).

59) Hi Precision Steel Center, Inc. vs. Lim Kim Steel Builders, Dec.13, 1993.

등이다. 중재절차와 관련한 사법적 개입은 예컨대 계류 중인 중재절차의 일시중지명령의 발동, 증거수집절차의 원조, 중재판정의 집행 등과 같은 경우로 극히 한정된다.⁶⁰⁾ 모범법은 국제상사중재와 특정한 국내법 체계와의 한정적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법심사를 제한한다. 그러므로 실체적 문제에 관하여 법원에서 다툴 권한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필리핀 중재법은 중재판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이나 명령의 이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는 항소법원에 규칙 제65조에 의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비록 중재결정이나 판정이 종국적인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할지라도 중재판정의 종국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⁶¹⁾

(5) 중재절차의 소송절차의 관계

필리핀 중재법은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 중재절차의 처리에 대하여 모범법과 차이가 있다. 중재법 아래서는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 중재절차의 당사자는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판결할 때까지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일시중지조치에 의하여 보호받았다.

그러나 모범법에 따르면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도 중재절차는 이와 무관하게 개시되거나 속행되며 분쟁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중에도 중재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제8조). 당사자 간에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의 직소를 금지하는 입법례와 직소를 허용하되 소송절차를 중지시키는 입법례가⁶²⁾ 있는데, 모범법은 전자에 해당한다.⁶³⁾ 따라서 법원은 중재합의를 무시하고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소멸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6) 공시요건

필리핀 중재법은 중재인의 공시의무에서 모범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재법에서는 분쟁과 관련하여 재정적, 신탁적, 기타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분쟁당사자와 신분관계가 있어서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판정을 받을 당사자의 권리침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중재인이 될 수 없다(제10조).

그러나 모범법에서는 사전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모범법에서는 중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때에 그의 편파성이나 독립성을 의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 있는 상황들을 개시하면 된다. 중재인은 그가 중재인으로 선정

60) 증거수집절차에 대한 법원의 협조는 법원이 갖는 증거수집권한에 의존하려는 것이지만 중재판정부의 요청 또는 중재판정부의 승인을 얻은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Alvarez, Kaplan and Rivkin, op.cit., pp.195-197.

61) 앞의 Chung Fu case.

62) 미국 연방중재법(제3조), 영국 중재법(제4조)이 이에 해당한다.

63) 이 밖에 뉴욕협약 제2조 (3), 워싱턴협약 제26조도 같다.

된 때부터 중재의 전과정을 통하여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인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사실이 아닌 한 그와 같은 상황들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제12조).

(7) 중재지

특히 국제중재에 있어서 당사자는 중재지법과 다른 실체법과 절차법의 적용을 받겠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과도한 비용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중재지는 편리함, 비용, 언어, 중재판정의 집행 등에까지 관련되는 민감한 사항이다.⁶⁴⁾

필리핀 중재법은 중재지 지정과 관련하여 모범법과 큰 차이가 있다. 중재법은 중재지 지정에 대하여 원칙을 정한바 없다. 반면에 모범법은 당사자가 중재지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중재자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편의성 등 당해 사건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한다(제20조). 나아가 중재판정부는 중재인 간의 협의하기에 적합한 것, 청문이나 증언에 편한 곳, 당사자의 전문가들, 재물·재산·문건 등의 조사에 필요한 곳 등을 고려하여 중재지를 정할 수 있다. 모범법 아래서 분쟁당사자들은 폭넓은 자기결정권을 부여받고 있다. 중재지 외에도 당사자들은 중재인의 숫자, 중재절차에서 사용할 언어를 포함한 중재절차의 규칙, 구두 또는 서면제출 등 청문의 유형을 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기관중재나 임의중재의 절차를 고려하여 중재절차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들의 특정한 요구에 맞추어 특별한 절차를 정할 수도 있다.

(8) 적용법

분쟁에 적용할 법률의 지정에 대하여도 필리핀 중재법과 모범법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재법은 적용법률 결정절차를 특정하지 아니한다. 이는 모범법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한 것(제28조)과 다르다. 다만 필리핀이 가입국인 1958년 뉴욕협약, 필리핀이 1978년 서명한 IBRD의 1958년의 워싱턴협약이⁶⁵⁾ 모두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적용될 절차적 규칙을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실체법에 대하여도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 만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이 중재합의 기타 거래관행을 감안하여 적용법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새겨왔다.⁶⁶⁾ 모범법은 당사자에게 특별한 법역의 법뿐만 아니라 다수의 법역의 법, 심지어는 일반적이고 국제적인 법원칙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였다. 당사자가 특정법을 지정하는데 실패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국제사법원칙에 의하여 적용 가능한 법을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나 중재판정부는 거래에 적합한 거래상 용법을 고

64) Gary B. Bor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Forum Selection Agreement: Drafting and Enforcing*, 2n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06, pp.1-2.

65) Gonzalo T. Santos,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Juliana R. Ricalde, *Commercial Arbitration*, U.P. Law Center, 1983, p.138.

66) Op.cit., p.161.

려하여 계약조항에 따라 분쟁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28조).

(9) 중재판정의 정정 또는 해석

필리핀 중재법은 중재판정부가 첫 번째 수단으로 중재판정을 정정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모범법은 당사자들에게 중재판정의 정정이나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제33조). 즉 당사자는 당사자 간에 기일에 대하여 달리 약정한 바가 없으면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계산, 인쇄, 식자의 오류나 비슷한 성격의 오류에 대하여 중재판정문의 정정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모범법은 아울러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게 중재판정문의 특정 요점이나 부분에 대하여 해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당사자는 중재절차상 나타났으나 중재판정문에서는 생략된 청구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추가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 모범법 수용에 대한 주장

그동안 필리핀에서도 모범법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표적 주장자인 Rodriguez의 견해를⁶⁷⁾ 소개한다.⁶⁸⁾

우선 적용범위에 대하여 Rodriguez는 만일 필리핀의 새 중재법이 모범법을 수용한다면 국내중재와 국제중재에 모두 적용되는 중재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모범법을 국제중재에도 적용하는 나라가 여럿 있다.⁶⁹⁾ 또 홍콩, 튜니지와 같이 모범법을 굳이 상거래에만 국한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대체적 분쟁해결 메카니즘으로서의 중재는 부동산 거래, 건설계약, 지적재산권 분쟁, 해사분쟁 등 어느 것이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에서 “상업”이라는 개념정의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다만 신분법상의 분쟁해결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⁷⁰⁾ 결국 필리핀 중재법을 모범법에 따라 개정되어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상사중재와 그 외의 중재를 모두 포괄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다만 중재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분쟁에 대하여만 적용제외를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또 법원의 개입범위를 보면 필리핀 중재법은 법원의 광범위한 개입을 허용한 까닭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중재판정부의 권한남용 등을 이유로 법원이 개입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모범법 제5조는 이 문제에 대하여 법원은 법

67) Rodriguez, op.cit., pp.94-104.

68) 모범법 제정 전의 자료로 UNCITRAL 모범규칙의 적용을 주장한 것으로 Santos, op.cit., pp.146-160.

69) 캐나다, 멕시코, 이집트, 홍콩, 캐나, 파테말라, 스리랑카, 뉴질랜드, 오만, 독일, 한국, 잠비아, 크로아티아, 요르단 등. Peter Sanders, op.cit., p.53, p.273.

70) 노르웨이의 경우 “재산에 관하여”라고 중재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개입할 수 없음을 명정하고 있다. 오로지 모범법 제34조가 정하는 극히 제한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⁷¹⁾ 다만 모범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는 필리핀의 지역쟁송법 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한편 중재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중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쟁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중재절차의 중지를 요구하는 때에도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모범법 제8조 2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법원의 임시보호절차에 관해서는 모범법 제8조 2가 임시적 보호절차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조항을 수정하여 아직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때까지만 임시적 보호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만일 중재판정부가 완벽하게 구성되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임시보호절차는 중재판정부에 배타적으로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는 장차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맞고 두 기관이 동시에 임시적 보호에 관한 동일한 권한을 실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⁷²⁾ 또 중재인이 그 자신의 과실 있는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채택할 것인지 문제이다. 이와 같은 조항은 중재인을 공평하게 보호하며 직업적 발전을 고취할 것이라는 이유로 모범법 제11조 뒤에 규정하자고 한다.⁷³⁾ 한편 중재인의 개시에 대해 필리핀 중재법이 당해 분쟁에 관하여 일정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중재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비교적 세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알릴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모범법 제12조 2를 반영하자고 한다.⁷⁴⁾ 또 중재조항 이외의 조항의 무효화문제로, 모범법 제16조는 중재법정에 대하여 자신의 관할을 결정하며 중재조항과 중재 계약의 다른 조항들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계약의 무효화가 그 사실 자체만으로(*ipso facto*) 중재조항을 무효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 이를 도입하자고 한다.⁷⁵⁾

모범법을 수용할 경우 중재법의 해석에 대하여는 유엔의 공식문건에 따르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⁷⁶⁾ 그 밖에 중재법정에 의한 임시보호조치, 중재법정에의 출두, 중재지, 비밀유지, 중재절차의 병합, 법의 선택, 중재판정의 내용, 중재판정을 정정할 중재판정부의 권한, 중재판정에 대한 재심에 대한 모범법 수용의견이 강력히 개진되었다.⁷⁷⁾

71) Rodriguez, op.cit., p.96.

72) Op.cit., p.97.

73) Op.cit., p.99.

74) Op.cit.

75) Op.cit., p.100.

76) 공식문건은 The Report of the UNCITRAL on the work of this eighteen session, held from June 3 to 21, 1985.와 The Analytical Commentary on the draft Text of a Model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ontained in the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to the 18th session of UNCITRAL.을 지칭하며 캐나다중재법 제4조(2)가 이를 해석원칙으로 명정하였다. Sanders, op. cit., p.53. 개별국가의 법령해석이나 재판과 중재실무에 있어서 “공식문건의 해석을 위한 노트(travaux préparatoires)”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Binder, op.it., p.7.

IV. 2004년 개정 ADR법

1. 경위

1992년 Fidel V. Ramos 대통령 정부는 경제회복과 개발을 주된 목표로 삼았고 투자 자유화와 관련법의 규제완화로 투자와 국제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당시 정부는 국제상사분쟁에 있어서 필리핀이 적합한 중재지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시아태평양의 전략지역인 점, 영어사용인구, 대륙법과 시민법의 혼합적 법체계,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사무인력의 존재, 각종 현대적 시설물 등을 강점으로 생각하였다.⁷⁸⁾ 그 결과 국제상사분쟁의 근대화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으나 법개정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중재법의 현대화를 통하여 중재에 친한 국가가 되고 실제로 효율적인 중재절차를 뒷받침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모범법은 여러 나라에서 그들의 국제상사중재제도를 현대화하는 방법으로 채용되어 시행을 통하여 검증되었다. 그럼에도 필리핀은 구태의연한 법을 고수하여 중재해결지로서의 매력을 잃었고 경제력의 격차 등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그 역할을 빼앗겼다는 지적이⁷⁹⁾ 있었다. 사실 필리핀의 분쟁해결제도는 국제사회의 관심밖에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⁸⁰⁾ 이는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같이 중재활성화에 적극적인 국가들이 주변에 있어 상대적으로 위축된 점도 있지만 중재제도를 뒷받침할 입법이 미흡하였다는 점도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이다.

2. 동법의 구성과 모범법 수용

(1) 구성

2004년 4월 필리핀의회는 2004년 ADR법으로 알려진 새로운 중재법을 제정하였다.⁸¹⁾ 필리핀 중재법으로 알려진 1953년 법의 제정 이후 50년만의 일이다. 동법은 중재제도가

77) Rodriguez, op.cit., p.105.

78) 오늘날 자국을 상사중재지로 육성하려는 각국의 경쟁적 노력에 비추어 보면 필리핀이 중재중심지가 되려는 것은 초기에 실현되기 어려운 이상(lofty ideal)일 수 있다. 1994년에 모범법을 자국 국제중재법에 수정·채용한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을 중재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하는 중재절차에서 외국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Legal Profession Act를 개정하는 등 앞선 노력을 하고 있다. Michael Polkinghorne, "More Changes in Singapore: Appearance Rights of Foreign Counsel", J. INT'L ARB. 22(1) 75-80(2005).

79) Lazatin / Prodigalidad, op.cit., p.46.

80) 혼히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의 국제상사중재만 소개하고 있다. Georgios Petrochilos, *Procedural Law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77, 84, 89, 293,

81) Republic Act No.9285.

필리핀에서의 국제상사중재의 유효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방법이 되도록 입안되었다. 동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필리핀에는 국제상사중재행위를 따로 규율하는 법은 없는 실정이었다.⁸²⁾ 그 결과 필리핀 정부를 포함한 기업들이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일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국외에서 외국법의 적용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2004년 법은⁸³⁾ 총8장 5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동법을 “ADR Act of 2004”로 약칭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⁸⁴⁾ 동법은 분쟁해결에 있어서 당사자 자치 또는 당사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중대함을 목표로 한다는 입법목적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⁸⁵⁾ 필리핀 정부가 분쟁의 신속하고 비편파적인 해결을 위하여 효율적인 수단과 대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은 분쟁이 법원에 제소되기 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 알선, 중재, 또는 이러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들의 혼합형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⁸⁶⁾ 제2장은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3장에서는 당사자가 다른 형태의 분쟁해결방식을 제안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4장은 국제상사중재, 제5장은 국내중재, 제6장은 건설분쟁중재, 제7장은 중재판정에 대한 사법심사, 제8장은 잡칙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법은 다양한 형태의 ADR을 예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정과 중재에 관하여 가장 많이 규정하고 있다.

2004년 법에 따라 2005년 10월17일 새 중재규칙이 승인되었고, 2008년 9월 15일에는 2005년 제정된 행정가이드라인의 개정이 있었다.⁸⁷⁾

(2) 모법법의 수용

2004년 개정법은 필리핀이 협약의 당사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내법이 미비하여 그 실효성이 없던 뉴욕협약의 적용을 강화할 것을 천명하였다.⁸⁸⁾ 이에 따라 뉴욕협약의 내용을 법제화하고 만일 협약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제정한 규칙에 따라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2004년 ADR법에서의

82) Lazatin / Patricia Ann T. Prodigalidad, op.cit., p.3.

83) REPUBLIC ACT NO. 9285 April 2, 2004 AN ACT TO INSTITUTIONALIZE THE USE OF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THE PHILIPPINES AND TO ESTABLISH THE OFFICE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FOR OTHER PURPOSES

84) Republic Act No. 9285, Sec.1.

85) Republic Act No. 9285, Sec.2. 당사자의 평등취급과 중재절차에서의 당사자 자치는 모법법의 목표이기도 하다(제18조, 제19조 이하).

86) 동법에서는 Early Neutral Evaluation과 Mini-Trial도 제시하고 있다. ENE는 주로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주로 재산청구소송에서 객관적이고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평가자를 양당사자가 선정하여 주장의 요약을 전달하고 구속력 없는 산정서를 받아 지급액 결정에 승복할지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미국중재협회(AAA)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ini-trial은 당사자가 상급 의사 결정자인 패널 앞에서 자기주장을 하고 당사자 간 협상으로 해결방안을 합의하는 분쟁해결 유형이다.

87) PDRCI, Handbook on Commercial Arbitration, 2nd ed., 2006, pp.5-16.

88) Republic Act No. 9285, Sec. 42, Sec. 43.

가장 놀라운 변화는 UNCITRAL 모범법의 명시적 수용이다.⁸⁹⁾ 동법은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모범법의 적용이라는 표제 아래 “국제상사중재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1985년 6월 21일에 채택하고 국제연합 총회가 1985년 12월 11일 결의번호 40/72로 입법을 권고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범법⁹⁰⁾의 적용을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다.⁹¹⁾

모범법의 해석은 모범법의 국제적 기원, 이것의 해석에 있어서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점, 모범법의 준비작업(*travaux préparatoires*),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사무총장의 1985년 4월 25일 보고서에⁹²⁾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제20조).

상사중재의 대상이 되는 ‘상사’는 그것이 계약적인 것이건 아니건 간에 상업적 성질과 관련성 있는 것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들을 포함한다. 상업적 성질과 관련된 것이라면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나 교환, 분배협정, 작업구축, 상사대표나 상사대리,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⁹³⁾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物融)에 관한 행위,⁹⁴⁾ 컨설팅, 엔지니어링, 실시허락, 투자, 금융, 은행, 보험, 공동사업 기타 다른 형태의 산업 또는 영업 회사의 형태, 항공·해양·철도·도로에서의 재화나 승객의 수송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필리핀에서 행하여지는 국제중재의 일방당사자는 특정인을 대표로 선정할 수 있다. 그 대표는 필리핀의 법 실무상 용인되지 아니한다면 그의 법정 출두가 중재와 상관있건 없건 간에 필리핀의 어느 법정이나 준사법적 절차에도 조력자의 자격으로 출정할 수 없다(제22조).

모범법에서 사용하는 “선정된 권한자”的 개념에 대하여 이는 중재합의에서 그 이름이 지정된 개인이나 기관 또는 중재를 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정규중재기관을 의미한다고 한다(제26조). 분쟁 당사자들이 그들의 분쟁해결을 기관중재 규칙에 일임하고 다른 절차를 선택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중재인의 선정이나 지명에 관하여 그 중재규칙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간주된다. 임의중재의 경우 중재인의 선임에 실패한다면 필리핀 통합변호사회(IPB)의 전국대표 또는 그의 복대리인에 의하여 중재인이 선임된다.

한편 모범법 제11조 3, 제11조 4, 제13조 3, 제14조 1에 규정한 기능은 선정된 권한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만일 선임된 권한자가 요청을 받고 30일 이내에 활동을 거절하거나 실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경우 신청자는 법원에 신청서를 경신하여야 한다(제27조).

89) Eduardo R. Centiza,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s Relevance in the Philippines", <http://www.pdrci.org/web1/art003.html>.

90) United Nations Document A/40/17.

91) Republic Act No. 9285, Sec. 19.

92)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Analytical Commentary on Draft Text identified by reference number a/CN. 9/264.

93) 한국 상법 제46조 제21호에 따른 번역.

94) 한국 상법 제46조 제20호에 따른 번역.

개정법 아래서도 분쟁당사자는 모범법의 중재규칙만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ICC 규칙, 미국중재협회(AAA)규칙, PDRCI규칙 등 협존하는 규칙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그들만의 절차를 설정하여 이를 선택할 수도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결여된 경우 방식에 관한 법이 이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인데, 필리핀에서는 2004년 법이 주로 적용되게 되었다.

2004년 개정법은 국제상사중재를 규정한 제4장에서 위의 사항 이외에 중재절차의 비밀성(제23조), 중재에의 회부(제24조), 법의 해석(제25조),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의 허용(제28조),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허용에 관한 중재인에 대한 추가위임(제29조), 중재지(제30조)와 중재언어(제31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2004년 ADR법의 주요내용

(1) 국내중재

1) 서언

2004년 개정법 제5장은 국내중재에 대하여 단 2개의 조문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내중재는 여전히 공화국법 제876호로 알려진 1953년 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는다. 국내중재라 함은 모범법 제1조 3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제적이 아닌 중재를 의미한다. 어떤 국가가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다로 규율할 것인지는 정책의 문제이다. 국제중재에서는 보다 깊은 법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⁹⁵⁾

그러나 국내중재라 하여 모범법의 적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04년 개정법은 국내중재에 여전히 1953년 법이 적용되는 점을 명정함과 동시에 모범법의 일부조항이 국내중재에도 적용됨을 선언하였다. 즉 모범법 가운데 중재합의 한 당사자가 법원에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한 제8조, 중재인의 수에 관한 제10조, 중재인선임에 관한 제11조, 중재인의 정당성을 의심할만한 경우에 관한 제12조, 이의제기절차에 관한 제13조, 중재인의 임기종료에 관한 제14조, 당사자 평등대우에 관한 제18조, 중재지 결정에 관한 제19조,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중재인에 의한 의사결정에 관한 제29조, 중재절차 중에 이루어진 화해에 대한 제30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제31조, 중재절차 종료에 대한 제32조, 그리고 2004년 법 제4장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절차규정 가운데 제22조로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은⁹⁶⁾ 국내중재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그렇다면 국내중재에도 상당부분

95) William W. Park, *Arbitrat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Disput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397-398.

96) 국제중재에서의 법적 대표, 중재절차의 비밀유지, 중재에의 회부, 법의 해석, 선임된 권한자, 선임된 권한자가 수행할 기능, 임시적 보호조치의 허용, 임시적 보호조치 허용에 따른 중재인에 대한 추가 위임, 중재지, 중재언어 등이다.

모범법의 수용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⁹⁷⁾

다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심리가 당사자들의 편의 및 정의의 목적에 더욱 잘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 수소법원이 관할권행사를 거부하는 이른바 불편법원의 법리(*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의 대상이 되는 중재에 있어서 분쟁당사자는 중재 절차를 선택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절차에 적용될 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에 의한 준거법 지정은 중재합의나 중재신청서에 명시되는 것이 보통이고 중재능력의 기본전제가 된다. 만일 당사자들이 필리핀법을 준거법으로 정했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 한다.

2) 중재합의효력의 구속력

중재합의는 필리핀 민법상 계약과 같은 구속력을 지닌다.⁹⁸⁾ 따라서 중재합의가 법률, 도덕, 관행, 공공질서나 공공정책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는 당해 약정에 기속된다. 1953년 중재법 제2조는 이 점을 고스란히 반영한 조항이다. 그러므로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나 당사자는 1인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에게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해주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자신들 간에 야기되는 향후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신청이나 계약은 유효하며 집행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존재한다고 하여 취소할 수 없다.⁹⁹⁾ 법원은 중재합의가 무효, 취소, 집행불능 등 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중재합의를 무시하고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절차 진행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1953년 중재법 제7조). 결국 당사자가 그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며 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¹⁰⁰⁾ 다만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다시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며 후의 합의가 유효하다. 중재합의의 이행을 구하는 자의 태만은 중재에 있어서 그의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의권의 포기(모범법 제4조)가 될 수도 있다.

3) 중재대상과 중재적격

어떤 다툼이 중재할 사항인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한 중재조항 그 자체에 따른다. 그러나 이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¹⁰¹⁾ 어떤 사항이 당사자 간 중재조항의 범주에 드

97)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1953년의 중재법이 적용된다. Eduardo R. Centiza,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s Relevance in the Philippines", <http://www.pdrci.org/web1/art003.html>. <2009.6.2>

98) Civil Code, Art. 1305, 1306.

99) Toyota Motor Philippines Corp. r. Court of Appeals, G.R. No. 102881, Dec. 7, 1992, 216 SCRA 236.

100) Republic Act. Sec.24.

101) Western Minolco Corporation v. Court of Appeals, G.R.No.L-51996, Nov.23.1988, 167 SCRA 592. 이 사건은 당사자 간에 계약의 의미, 적용 및 효과, 실시 계산과 액수에 관한 문제만을 중재부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성실의무위반과 이중거래 등을 이유로 감액 및 다른 비용항목을 중재부탁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런 사항은 중재합의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원이 판단하며 만일 그 범주에 드는 것이라면 법원은 중재절차의 속행을 명한다.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노동문제를 비롯하여 사람의 민사상 신분, 혼인의 유효성, 법정이 혼사유, 법원의 관할, 적출, 형사책임, 법률이 화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다툼은 중재적격이 없다.¹⁰²⁾

4) 임시보호

중재판정부에 중재신청을 한 상태에서 임시보호를 청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모순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중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법이 정한 사유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임시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법정사유는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나 손상을 예방하고자 할 때, 의무수행을 위하여 보장이 필요한 때, 증거보전이나 생성을 위해 필요한 때, 다른 행위나 실수를 강요할 때 등이다. 이때 청구는 문서로서 일정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동시에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보호절차의 집행을 지원해주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¹⁰³⁾

5) 중재판정의 종국성

중재판정은 그것이 내려진 때로부터 1월 이내에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당해사실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 필리핀 법원에 대하여 확인청구를 하고 법원이 확인명령과 함께 이를 재판목록에 기재함으로써 종국적 효력이 생기며 장래에 그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¹⁰⁴⁾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건설중재위원회의 건설중재는 종국적이며 법원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판례가운데 중재판정의 종국성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의 무효, 정정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당사자는 사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가¹⁰⁵⁾ 있다. 결국 당사자 간에 중재판정이 종국적이며 달리 다툴 수 없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다루게 된다.

6) 중재인선임

필리핀 민법은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더 많은 중재인 선임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계약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제2045조)하며 이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모두에 적용된다.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고 합의가 없을 때에는 3인이다. 이는 모범법 제

102) Republic Act. No.9285, Sec.6.

103) Republic Act No. 9285, Sec. 28.

104) Republic Act No. 9285, Sec. 40.

105) Chung Fu Industries(Phils), Inc. v. Court of Appeals, G.R. No.96283, Feb.25, 1992, 206 SCRA 545.

10조, 1953년 중재법 제33조와 같다. 만일 당사자가 중재인선임을 거부하거나 실패한 경우, 필리핀통합변호사회 회장이나 법원 등 선임권자(Appointing Authority)는 중재계약에서 달리 정한바 없는 경우에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을 선임한다. 필리핀 중재법이 중재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은 기술하였다.

중재인선임과 관련하여 국내중재의 중재인은 오직 중재법 제10조가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피되었으나 2004년 법의 제정으로 이에 더하여 중재인의 독립성과 중립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당사자 간에 중재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기피사유로 되었다.¹⁰⁶⁾ 당사자는 자신이 선임하거나 동의한 중재인일지라도 후에 그와 같은 기피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기피할 수 있다. 모범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는 기피절차에 합의할 수 있다.¹⁰⁷⁾

7) 중재절차

중재부탁은 서면으로 하며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계약상의 중재조항에서 정한 범주를 넘어서는 사안에 대하여 부탁할 수 있다.

8) 중재판정

당사자가 일정기간 내에 판정을 원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가급적 이를 준수하려 하지만 그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감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¹⁰⁸⁾ 그러나 이 기간은 당사자의 동의로 연장할 수 있다. 판정문에는 중재지와 중재일자를 기재하고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명할 수 없는 중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기재하고 다수가 서명하면 된다. 당사자의 일방은 중재법 제25조가 인정하는 사항을 근거로 대법원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 해당원심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하여 정정,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제24조에 의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법전인쇄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¹⁰⁹⁾ 2004년 법의 시행규칙은 이를 바로 잡았는데, 부패, 사기 등의 방법으로 판정을 받아낸 경우, 중재인 일부나 전원의 명백한 편파성 또는 부패, 충분한 이유가 있는 청문의 연기를 거절하거나 관련성 있는 중요증거의 청문을 거절한 비행, 1인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의 무자격과 해당 중재인의 무자격의 은폐, 당사자 일방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편견으로 인한 부정행위, 중재인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상호적이고 종국적이며 명확한 판정이 내려지지 못한 때에 한하

106) Republic Act No. 9285, Sec. 33. Model Law Art.12(2).

107)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인수당은 당사자가 중재 전에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은 이상 하루 50페소이다 (제21조). 이는 한화 약1,313원 정도로 터무니없는 액수이므로 2004년 법의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중재인수당과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였다.

108) Republic Act No. 876. Sec.19.

109) Lazatin / Prodigalidad, op.cit., p.37.

여 중재판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필리핀대법원은 중재판정무효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중재판정은, 건설중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집행 할 수 있다.

(2) 국제중재

1) 모범법의 적용

필리핀의 2004년 법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변화는 모범법의 채용이다. 그 결과 당사자는 분쟁에 적용될 실체법과 절차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국내중재에 대하여도 부분적으로 모범법이 적용되어 국제중재와 흡사하다.

2) 중재합의효력의 구속력

당사자가 하는 중재합의에는 대개 당사자가 계약이건 아니건 법적 관련성 있는 것으로 한정한 그들 사이에 야기된 또는 야기될 모든 분쟁이나 특정분쟁을 중재부탁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중재합의는 계약의 일부이어도 되고 별개 합의로 하여도 무방하다. 위에서 소개한 국내중재와 흡사하게 만일 당사자가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사안을 특별히 그와 같은 합의가 무효, 취소 또는 집행불능으로 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모범법 제8조와 같은 태도이다. 그러므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도 중재절차는 개시되고 진행되며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진다(모범법 제25조).

3) 중재조항의 범위와 중재적격문제

모범법은 중재판정부가 유효하고 현존하는 중재합의에 대하여 그 자신의 관할권이 있음을 인정하도록 한다(제16조). 만일 중재판정부가 사전에 관할권에 대하여 의문을 지닌 때에는 그와 같은 판정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문제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결정은 상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임시보호

국제중재에 있어서도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임시보호를 명할 수 있다. 이는 모범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아직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와 같은 임시보호를 허용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적절한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¹¹⁰⁾ 이와 같은 구제는 2004년 ADR법에 따라 국내중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¹¹¹⁾

110) Republic Act No. 9285, Sec.28.

5) 중재판정의 종국성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중재판정문의 명백한 오기, 계산상 오류 등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재부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문에서 빠져 버린 부분에 대한 추가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모범법 제33조 (1)(A)에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안에 다른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당사자 일방은 중재판정문의 일부나 특정부분에 대한 해석을 판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중재판정문 또는 수정된 중재판정문의 수령 후 3월 이내에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합의의 무효를 다투는 주장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는 상대방이 중재합의를 할 행위능력이 없음, 중재합의의 무효, 중재인선임사실이나 중재절차의 불통지, 중재부탁의 범위를 넘어선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 공서 등을 이유로 할 수 있다. 이는 모두 모범법에 따른 것이다.

6) 중재합의의 집행가능성

필리핀에서는 중재합의는 일종의 계약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은 당연히 그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2004년 ADR법은 무효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중재합의의 일방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를 중지하고 중재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¹¹¹⁾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자신들의 분쟁을 법원에 제소하기로 상호합의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일방당사자의 의무불이행의 경우 모범법 제25조에 따른다.

7) 중재인 선정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여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필리핀의 정책이다.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보다 많은 수의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당사자 간 정한바가 없는 경우, 중재인은 3인이다. 중재인선정권한이나 법원의 선정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모범법 제11조). 그러나 국내중재와 달리 중재인으로 선정된 자가 이를 수락 또는 거절하여야 하는 기한도 없다. 다만 수락이나 거절이 합리적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할 뿐이다. 당사자 간 합의로 중재인 자격을 제한할 수 있지만 법에서는 달리 제한하지 아니한다. 모범법은 중재인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정도이다. 다만 모범법에서도 중재인이 그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의 상황에 있다면 중재인으로 선정된 때나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자신의 그와 같은 상황을 당사자가 이미 알고 양해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있다. 중재인이 당사자가 합의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의 중립성 및 독

111) Lazatin / Prodigalidad, op.cit., p.18.

112) Republic Act No. 9285, Section 24.

립성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기피할 수 있다. 이것 역시 모범법 제13조가 규정하는 것이다. 중재인수당에 대하여 모범법과 2004년 법에서는 규정하는 바 없다.

8) 중재부탁

중재부탁의 형식에 대하여는 모범법이나 2004년 ADR법 모두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고 또한 상대방에게 송부되어야 하므로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중재부탁에 대한 답변이나 반대부탁 등에 대하여는 모범법 제23조 등에 따른다. 중재부탁의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진 중재요청서와 답변서는 최초의 소답(statement of claim)은 아니며 중재신청 할 권한 있음과 중재할 사항의 대강만 기재되면 된다.

9) 중재판정

중재판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내에 행하여져야 하며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 기간 내에 내려져야 한다. 이는 모범법 제19조와 제28조상 명백하다. 중재판정을 무효로 할 사유에 대하여는 모범법 제34조가 규정한다.

지역원심법원은 모범법 제34조가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재판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그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따른다. 국제상사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2004년 법은 모범법 제35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¹¹³⁾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대법원규칙의 적용을 받는데, 국제예약과 상호주의에 의한 승인 및 집행을 인정하고 있다.¹¹⁴⁾ 외국법원의 확인을 받은 외국중재판정은 외국판결과 달리 필리핀 내에서 승인·집행될 것이다.¹¹⁵⁾

4. 2004년 ADR법 하에서의 중재현실

(1) 중재법의 법원(法源)

국제중재에 관한 한 2004년 법이 중재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될 가장 중요한 법원이다.

또한 화해를 상호간의 양보에 의하여 소송을 피하여 이미 개시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의하고 있는 필리핀 민법 제2028조~제2046조도 그 적용이 있다.¹¹⁶⁾ 1958년의 뉴욕협약, 1985년의 UNCITRAL 모범법, 대법원의 선례 등도 법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적용된다.¹¹⁷⁾

113) Republic Act No. 9285, Section 40.

114) Republic Act No. 9285, Section 40.

115) Lazatin / Prodigalidad, op.cit., p.43.

116) 이에 대하여는 앞서 소개하였다.

국내중재에 대하여는 역시 2004년 법이 가장 중요한 법원이며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중재나 화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의 일부인 1953년의 중재법과 모범법 제8조, 제10조~제14조, 제18조, 제19조가 중요한 법원이다. 말하자면 2004년 법은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기본법이자 1953년 중재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의 ADR이나 건설중재 등 특별법에 근거가 있는 ADR은 그 해당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원이 결정된다.

(2) 중재기관

오늘날 필리핀에서의 중재실무는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 기관중재(institutionalized arbitration), 특별중재(special arbitration)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임의중재는 필리핀법이 당사자에게 중재인 선정권과 기관중재규칙을 포함하여 당해 중재절차에 적용될 과정을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당사자가 합의한 이상 법률, 도덕, 관행, 공공질서 또는 공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떤 절차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¹¹⁸⁾ 기관중재는 중재법원, 무역협회, 중재기구나 센터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며 독자적인 중재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중재기관으로 으뜸가는 것은 필리핀 대체적 분쟁해결 센터(the Philippine Dispute Resolution Center Inc. ("PDRCI"))로 알려져 있는데, 중재기관들은 분쟁해결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행정절차를 돋거나 중재절차에 적용될 규칙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¹¹⁹⁾ PDRCI는 지적재산권관련 분쟁도 다룬다고 한다.¹²⁰⁾ 국제중재에 관한 규칙으로 가장 빈번이 원용되는 것은 국제상업회의소(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홍콩국제중재센터(Hong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IA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의 중재규칙이다. 그러나 PDRCI를 비롯한 모든 기관중재규칙에 중재절차에 필수적인 모든 사항들이 포함되기는 어렵다. 기껏해야 중재절차의 개시, 답변의 제출과 반대청구, 중재인선임, 법률대리, 비용과 수수료 할당 정도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거나 특별한 절차적 문제들은 중재기관이나 중재인의 판단에 맡겨져 있게 된다. 더구나 중재기관의 규칙이 모든 중재에 폭넓게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간단한 쟁점이나 복잡한 법률문제, 세밀한 사실확인 등 다양한 중재안건의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는 점은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기관중재에 있어서 규칙은 사례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한편 특별중재는 건설중재와 같이 분쟁의 종류가 특별하거나 특정 산업분야에서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일컫는

117) Lazatin / Prodigalidad, op.cit., p.8.

118) CIVIL CODE, Art. 1306.

119) Lazatin / Prodigalidad, op.cit., p.5.

120) Centiza, op.cit., p.5. 필리핀중재센터는 물론 중재인이나 조정인 선임, 상사중재에 관한 세미나개최, 훈련기회부여, 다양한 국제분쟁해결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추천서비스, 중재계약이나 간련법에 대한 정보제공을 업무로 소개하고 있다. FDRCI, op.cit., pp.84-85.

다.¹²¹⁾ 임의중재, 기관중재, 특수중재 등 분쟁해결의 여러 경로에도 불구하고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절차가 당사자의 선택이나 합의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당사자는 당해 기관의 중재규칙을 배제하고 ICC, 미국의 AAA, UNCITRAL 규칙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아무선택도 없을 때 법정지법이 적용된다.

(3) 중재문화

오늘날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세계적으로 가장 폭넓게 수용되는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임에도 필리핀에서는 다툼의 공식적 해결에 대한 불신이 깊어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중재방식의 발전을 저해하여 왔다. 회사를 포함한 상업적 분쟁의 당사자들은 대개 당사자 간의 상담이나 협상을(consultation and negotiation) 중요한 분쟁해결 기법으로 활용하여 왔다. 만일 당사자 간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당사자들은 독립적인 제3의 조력자를 물색하였는데, 대개 대부나 후원자로서 *ninong*이라고 불리는 자들이¹²²⁾ 조정, 화해, 판정등을 통하여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해결하곤 하였다. 이와 같은 전통적 방식을 중시하여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Code)은 명시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일종의 시민적 화해위원회인 *Lupon Tagapamayapa*¹²³⁾에서의 분쟁해결을 규정한다. 동 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종국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화해일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할 수 있다. 그 밖에 필리핀-중국계(Filipino-Chinese) 공동체에 속하는 인종을 위한 전통적 분쟁해결문화로 공동체 단위 또는 같은 성씨를 지닌 협동으로 구성되는 가족협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조정, 알선, 화해가 있다. 공식적인 화해나 조정 등의 분쟁해결방법은 필리핀에서는 아직 유아기에 있다고 한다.¹²⁴⁾ 기관들이 신뢰를 얻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V. 결 론

필리핀은 이미 오래 전에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경험하였고 식민지시대를 통하여 중재에 관하여 다소 복잡한 법체계를 지니고 있었다. 필리핀을 중재에 앞선 나라라고 하기 힘들다. 이는 법원의 보수적인 입장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다행이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

121) 예컨대 수표지급결제에 관한 은행분쟁은 필리핀은행가협회의 지원하에 별도의 기구에서 이루어지며, 건설분쟁은 1985년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 1008 "E.O. No. 1008")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산업중재위원회(Construction Industry Arbitration Commission ("CIAC"))가 전담하는데 다국간 건설분쟁의 중재를 포함하여 필리핀 굴지의 중재기관으로 꼽힌다.

122) 분쟁당사자들이 호선하는 “*ninong*”은 통상 고위직의 인척이나 친지, 정계나 종교계 지도자, 평판 있는 사업조력자, 동료 등이 보통이다. 조정인이나 알선인은 판정을 내리거나 화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봉착상태를 타개하고 우의적인 해결에 합의하도록 제시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

123) Republic Act No. 7160, Secs. 416 and 417.

124) Lazatin / Prodigalidad, op.cit., p.10.

이 바뀌면서 1953년에 중재법이 민법전의 일부로 제정되고 뉴욕협약에도 협약이 성립하던 해에 서명하였으나 1953년 법은 국제중재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경제개발이 화급한 국가목표인 필리핀으로서는 국제거래의 증대와 외국자본에의 문호개방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법제와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국가와의 거래증가는 필연적으로 분쟁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전망아래 필리핀정부는 50여 년 만에 분쟁해결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2004년의 ADR법이 그것으로 동법은 국제상사중재에 모범법을 전면 수용하였고 국내중재에도 상당부분 수용하였다. 동법은 조정 등 다양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역시 조정과 중재라고 할 수 있다. 아직 1953년의 중재법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등 중재법의 완벽한 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필리핀은 모범법을 늦게 수용한 편에 속하지만 2004년 다행을 싫어하는 사회적 분위기, 소송절차의 지연과 높은 비용을 고려할 때 필리핀에서 중재제도가 활성화 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상사중재분야에서 상당히 선진화가 이루어진 주변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필리핀정부가 강력한 정책의지를 지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Gilbert S. Coronel, "Philippine law on persons and family relations: What it says, what it means, and why it is like that", 「외법논집」 제17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김선정, "홍콩중재령에 있어서 UNCITRAL모범법의 수용", 「중재학회지」 제7권, 1997.

[외국문헌]

Cherry-Lynn S. Ricafrente, "Commercial Arbitration in ASEAN countries", Juliana R. Ricalde, Commercial Arbitration, U.P. Law Center, 1983.

Custodio O. Parlade, "Remedies after arbitration award", Juliana R. Ricalde, Commercial Arbitration, U.P. Law Center, 1983.

Eduardo R. Centiza,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s Relevance in the Philippines", [<2009.6.2>](http://www.pdrci.org/web1/art003.html)

Esteban B. Bautista, "Philippines", Gonzalo T. Santos ed, 1980 ASEAN Comparative Law Series Vol. 7.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ASEAN Law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1982.

- Gary B. Bor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Forum Selection Agreement: Drafting and Enforcing*, 2n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06.
- Gonzalo T. Santos,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Juliana R. Ricalde, *Commercial Arbitration*, U.P. Law Center, 1983.
- Henri C. Alvarez, Neil Kaplan, CBE, QC, and David W. Rivkin, *Model Law Decis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 Julian D. M. Lew / Loukas A. Mistelis, *Arbitration Insights. Twenty Years of the Annual Lecture of the Schoo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Kluwer Law, 2007.
- Mariano P. Marcos, "Concept, legal basis and scope of commercial arbitration", Juliana R. Ricalde, *Commercial Arbitration*, U.P. Law Center, 1983.
- Michael Polkinghorne, "More Changes in Singapore: Appearance Rights of Foreign Counsel", *J. INT'L ARB.* 22(1) (2005).
- Michael Polkinghorne / Darren Fitzgerald, "Arbitration in Southeast ASIAS: Hongkong, Singapore and Thailand Compared", *J. INT'L ARB.* 18(1) (2001).
- Michael Pyles ed., *Dispute Resolution in Asia*, 2n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02.
- PDRCI, *Handbook on Commercial Arbitration*, 2nd ed., 2006.
- Peter Binde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UNCITRAL Model Law Jurisdictions*, Sweet & Maxwell, 2000.
- Peter Sanders, *The Work of UNCITRAL on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2nd & expende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 Rainier R. Mamangun, "The Philippine Arbitration Law and The UNCITRAL Model Law", <http://www.hg.org/article.asp?id=5124<2009.5.1.방문>>.
- Rufus B. Rodriguez, *Philippine Arbitration and The UNCITRAL Model Law*, Rex Book store, 1996.
- Rukia Baruti Dames, "Provisions for Resolution of Investment Disputes Within ASEAN - The First Arbitral Award and Its Implications for ASEAN's Legal Framework", *J. INT'L ARB.* 22(6) (2005).
- Salvador S. Panga, Jr., "Overview of Arbitration in the Philippines", 한국중재 학회 / 필리핀분쟁해결센터 공동주최 「2009년 한·필리핀 경제협력 정책세미나 및 학술대회자료집」, 2009.
- Victor P. Lazatin / Patricia Ann T. Prodigalidad, "Arbitration in the Philippines", http://www.aseanlawassociation.org/9GAdocs/w4_Philippines.pdf.<2009.5.4방문>.
- William W. Park, *Arbitrat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Disput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ABSTRACT

An Overview of the ADR Act of 2004 in the Philippines

- Focused on the Adoption of the UNCITRAL Model Law -

Sun-Jeong Kim

This study describe the brief history and current statutes of Philippine arbitration. The practice of arbitration in the Philippines can be traced as far back as the *barangay*. From 1521, Spanish Civil Code became effective in the Philippines. During this period, the Supreme court was discouraged by the tendency of some courts to nullify arbitration clauses on the ground that the clauses ousted the judiciary of its jurisdiction. According to the growing need for a law regulating arbitration in general was acknowledged when Republic Act No.876(1953), otherwise known as the Arbitration Law, was passed. In 1958, the Philippines became a signatory to the New York Convention and in 1967 the said Convention was ratified. But no legislation has been passed. As a consequence, foreign arbitral awards have sometimes been deemed only presumptively valid, rather than conclusively valid.

Fifty years after, the Philippine Congress enacted, Republic Act No. 9285, otherwise know as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2004. The enactment was the Philippines solution to making arbitration an efficient and effective method specially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To keep pace with the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trade, ADR Act of 2004 also ensured that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ould be governed by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also fortified the use and purpose of the New York Convention by specifically mandating.

I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ill be revitalization in the near future in the Philippine, it will be shown that the model law's comprehensive provisions will give the beat framework for arbitration.. The writer expect that Philippines continues in its effort to be the premier site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Southeast Asia.

Key Words:ADR Act of 2004 in the Philippines, Arbitration Act of the Philippine, Philippine Dispute Resolution Center Inc. UNCITRAL Model Law in the Philippine, Philippine and New York Convention